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2015. 7. 20. 국회
황창근(홍익대 법대)

논의 배경

- 최근 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중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의 심의신청 자격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제3자 등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고 함
- 개정 논의의 핵심 이유는, 현행 심의규정은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형사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다는 것임
-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현행 심의절차가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함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신청 절차 도입 경과

- 2014. 1. 9.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제10조제2항 신설)
 - 신설 이유 :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서, 해당 사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13.12.17.)
 - 특히, 심의절차에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심의절차의 개시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하였음.

*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5년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

-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의 심의신청요건 수정

-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다른 법률에서 반의사불벌 취지로 규정된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심의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다만 친고죄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규정 제10조 제2항 수정).

-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예컨대, 모욕죄)

- * 반의사불벌죄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터넷명예훼손죄)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구조

분류	내용	근거	특징
민사적 구제	손해배상/삭제 청구 등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 직접적 구제조치 - 당사자의 제소 등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함
행정적 구제	행정심의	정보통신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구제조치 - 당사자간의 사적 분쟁에 행정이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 중 중요한 분쟁에 대하여는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청이 개입함 -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절차와 간접적인 구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형사절차의 중간 영역 -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민사절차에 의할 것인지 형사절차에 의할 것인지 문제가 됨
형사적 구제	형벌	정보통신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적 구제조치 - 형벌은 직접적으로는 윤리나 도덕 위반에 대한 대응방식이지만,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 구제의 효과를 달성케 함 - 이런 의미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유무를 형사소추절차로 받아들이게 된 것임
자율적 구제	임시조치/조정	정보통신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간 자율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행정심의(제44조의7)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제1항 제2호)

- 반의사불벌 대상 :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제2항 단서)

• 인터넷 명예훼손죄(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44조의2)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할 수 있다.(제1항)

개정논의의 쟁점

1) 인터넷상 명예훼손 대응의 본질

- 명예의 침해 여부의 판단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기준
 - 명예훼손의 여부는 단순히 명예훼손사실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명예감정의 침해 여부 등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됨
- 그런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로서 반의사불벌과 친고의 절차를 두게 된 것임
 - 예컨대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침해법익의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기인한 것임
- 실무상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청여부를 절차상 달리 규정할 필요가 높지 않음

2) 행정심의회제의 2중적 성격에 따른 특징

- 행정심의회계는 행정작용과 준사법절차라는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본질적으로 사적 분쟁으로서 당사자간의 사적 해결이 궁극적이라고 할 것인데,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권이 행정처분이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제도에 해당
 - 행정절차원리에 따라 정보게시자에 대한 처분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의 반의사 불처분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심의회 구조는 사실조사와 처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인데, 이는 형사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의 엄격 분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형사재판절차에서 창안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절차 개념을 그대로 행정작용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함

3) 정보통신망법상 반의사불벌(불처분)의 의미

-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제44조의7 제2항 단서)
- 다만, 문언해석상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가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대판 1970.5.26. 70도704),
 - 행정심의회는 재판절차와 비교하여 밀행적이고,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
- 결국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되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게시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4) 개정안에 의할 경우의 예상되는 부작용

-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로 심의절차가 개시되게 되면 심의건수가 대폭 증가되어 행정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결국 시정요구 등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심의위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당사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움
- 당사자가 심의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로서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하지 말하는 법문에 위배되는 조치임
- 현재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의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오·남용의 가능성만 상존함

결론 및 대안

1)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규칙이 아니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형벌, 행정심의회, 임시조치, 민사구제 등의 제반 법적 대응조치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결국 핵심사항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임
- 그를 형사소추절차에서는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의 방식으로, 행정심의회에서는 반의사불벌(불처분)의 형식으로, 민사구제 및 임시조치에서는 당사자의 제소(요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 중 행정심의회는 지극히 사적인 다툼에 행정권이 관여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소극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의개시 시점부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현행 심의규정이 행정심의회 의 취지에 보다 부합함

2)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필요성

- 오히려, 반의사불처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명예훼손정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행정심의에서 처분의 종류는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이므로, 명예훼손정보의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구제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상 청구에 따른 구제방식과 유사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인터넷 명예훼손죄(제70조)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형사법체계의 고려상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지만, 명예훼손정보가 행정상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친고형식으로 개정하더라도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아니함